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7. 1. (목) / 총 5매(본문5)	
담당 부서 공정건설추진팀	담 당 자	• 팀장 박진홍, 사무관 하철호, 주무관 김국남 • ☎ (044) 201-3572, 3497	
보 도 일 시	2021년 7월 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1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

- 실적의 손실이 없도록 사업자가 유리한 방안으로 실적전환
-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등록기준 유예
-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·적격심사 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

□ 국토교통부 (장관 노형욱)는 시설물유지관리업(이하 “시설물업”)의 업종전환 신청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.

-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.
- 또한,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,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하도록 하였다.
- 업종전환 시 실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실적을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모두 활용(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)하거나 종전 실적 중 토목 또는 건축분야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% 가산하도록 하였다.

□ 시설물업 업종전환과 관련된 일정 및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.

① (업종전환 자격) ①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②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①종합건설업(건축 또는 토목) 또는 ②전문건설업(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)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.

② (신청일정)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\*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.

\* (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) 건설협회 접수 → 시·도 처리  
 (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) 시·군·구에서 접수 및 처리

○ 다만,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\*이 높아지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.

\* ('21년 신청) 50% 가산, ('22년 신청) 30% 가산, ('23년 신청) 10% 가산

○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(부칙 제2조)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.

《 시설물업 업종전환 추진 일정 》

	'21.7.1일	'22.1월	'23.1월	'24.1월
시설물업 업종전환	사전 신청	자	우	전 환
				등록말소

③ (효력발생) 업종전환 사전 신청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,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턴 전환된 것으로 본다.

○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,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(입찰 참가자격)를 인정받을 수 있다.

○ 다만,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업종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.(전환업종의 사업자로 수행한 실적만 인정)

④ (등록기준 유예)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·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. 다만,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기준(자본금·기술자)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.

○ 또한, 2026년(3분기)에 일정 기준\*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.

\* (기준) ① '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, ② '23~'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

《 등록기준 유예 특례 부여기간 》



○ 등록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제조합 등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의무 예치금도 유예되며,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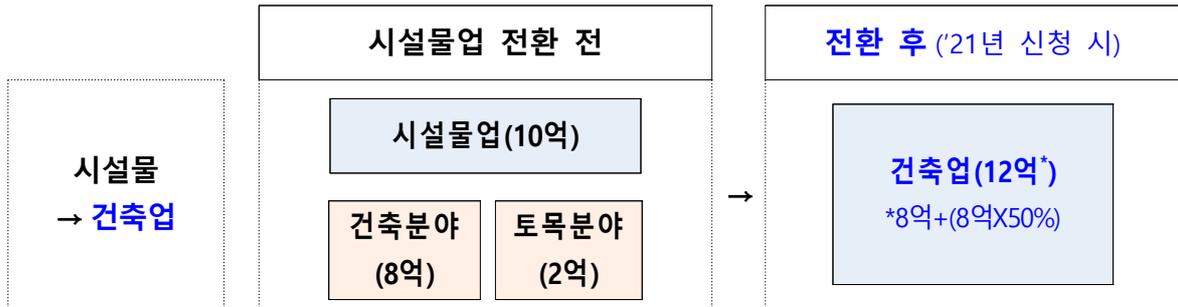
⑤ (실적전환) 전환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은 ①종전 실적을 토목/건축 분야로 구분하고,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%까지 가산\*받아 인정받는 방안과 ②가산 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하여, 사업자별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\* ('21년 신청) 50% 가산, ('22년 신청) 30% 가산, ('23년 신청) 10% 가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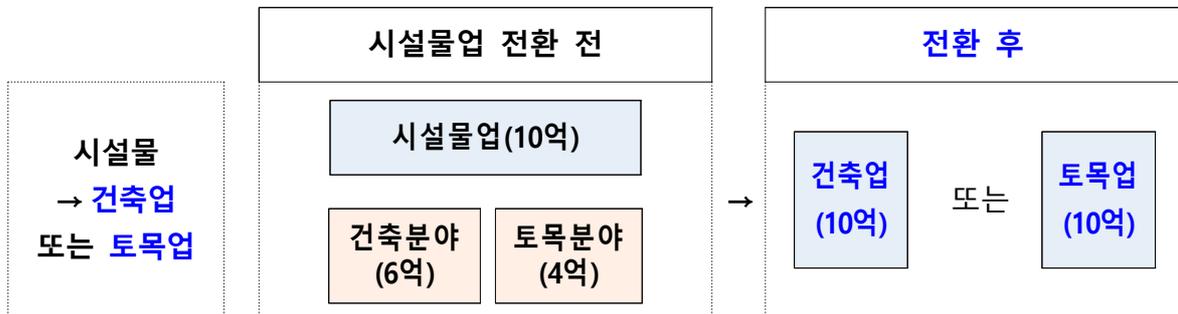
○ 아울러,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전 시설물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/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.

《 사례 별 실적전환 예시 》

- 종전 실적을 토목/건축 분야로 구분하고, 전환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가산받고 인정받는 방법(❶의 방법 적용)



- 가산 없이 종전 실적 모두를 전환업종으로 인정(❷의 방법 적용)



-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업종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실적이 전환되는 날부터 가산 및 인정받은 실적으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(신축 및 유지보수)할 수 있게 된다.
- 실적전환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'21년 9월\*부터 '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<https://kison.net>)'에 접속하여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,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·가산할 수 있다.

\* 종전실적 전환신청 시기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KISCON) 개편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개편완료 후 각 협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

- '21년 사전신청 시 '20년 이전의 실적은 업종 전환 시점('22.1.1)에서 전환되며, '21년 실적은 실적확정('22.6.1) 시 '20년 이전의 실적 전환 비율대로 자동 전환된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“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**원활한 업종전환**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·도에서 **현장 설명회**를 개최할 계획이며, 관심있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\* 시도별 현장 설명회 일정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예정

□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담은 **제정안 전문**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“정책자료/법령정보/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”에서 **확인**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하철호 사무관(☎ 044-201-357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